

保安林도 休養林造成可能

輕微한 施業은 規制 緩和

金 廷 柱 / 山林廳 法務擔當官

〈前號에서 繼續〉

— 第53條의 3 (聽問) —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種·苗販賣業登錄, 林産物加工業 登錄 取消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當該處分の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該處分の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正當한 理由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處分相對方の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더라도 聽聞制度 導入

行政處分 取消에 對한 聽聞制度는 取消處分前에 當事者에게 意見陳述의 機會를 賦與함으로써 處分の 公正性을 確保 하고자 하는 制度로서 處分相對方の 自進疏明 또는 眞意把握을 爲하여 必要한 制度이다.

앞으로 모든 不利益 處분에 對하여 聽聞制度를 擴大導入하여 處分相對方에게 疏明의 機會를 賦與하는 發展行政이 必要하다.

— 第62條(保安林안에서의 行爲制限) —

— 保安林안에서 山林廳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立木·竹의 伐採, 林産物의 掘取·採取, 家畜의 放牧 其他 土地의 形質을 變更하는 行爲를 못하게 하던것을 保安林내라도 休養林 造成計劃을 承

認받은 區域은 許可對象에서 除外하도록 하고,

— 다만, 許可받아야 되는 行爲中 撫育을 爲한 伐採와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立木·竹의 伐採, 林産物의 掘取·採取는 申告로 하게 하거나 申告없이 하도록 改正.

保安林은 水源涵養等 公益機能 維持를 爲하여 指定되는 것으로서 保安林内에서의 行爲는 公益目的 達成을 爲하여 指定되는 것으로서 保安林内에서의 行爲는 公益目的 達成을 爲하여 一般山林内 行爲에 比하여 強한 規制가 施行되어 왔으나,

保安林指定 目的達成에 支障이 없는 範圍内에서 輕微한 施業은 自律化하는 등 規制를 緩和함으로써 山林所有者의 便宜를 圖謀하도록 撫育을 爲한 伐採와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立木·竹의 伐採는 申告로 하게 하거나 申告없이 하도록 하였고,

休養林의 경우에는 休養林造成計劃 承認時에 保安林内 行爲制限에 對하여 一括檢討을 하기로 하고 行政間素化 則面에서 別途의 許可는 받지 아니하도록 改善하였다.

— 第75條(國有林의 貸付等) —

“山林組合 또는 山林組合中央會가 工事

業目的 達成을 爲하여 直接 必要할 때 와 休養林·樹木園 및 狩獵場 施設” 靑少年 育成法 第2條 第2號에 대한 靑少年施設” 을 爲하여 必要할 때에도 國有林을 貸付 할 수 있도록 改正.

國有林을 貸付할 수 있는 事業目的은 從前에는 公用, 公共用, 公益事業을 爲하여 必要할 때등 7個事項이 規定되어 있으나 山林組合等 山林團體를 育成하기 爲하여 山林組合과 同中央會가 事業目的達成을 爲하여 直接 必要로 할 때에는 國有林을 貸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도 事業性格上 公益性·公共성을 띤 休養林·樹木園·狩獵場施設과 靑少年施設 등에도 貸付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였다.

**第78條, 第89條
(國有林貸付 및 分收林設定 取消)**

- 山林廳長은 貸付 및 分收林設定된 國有林이 國家·地方自治團體의 事業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取消할 수 있는데 取消事由에 土地收用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事業을 追加하고
- 國有林貸付 또는 使用許可 取消로 因하여 借受人에게 損失이 있을 때에는 그 山林을 使用할 機關이나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補償하도록 新設.
- 分收林設定이 取消된 때에는 受益을 分配하거나 費用을 辨償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費用의 辨償은 山林을 使用할 機關이나 事業施行者가 行하도록 各各 改正.

貸付 또는 分收林設定 取消事由에 公益

事業을 追加한 것은 國土의 利用開發 則面에서 公益事業에 必要한 用地確保를 爲한 것으로서 公益事業의 定義를 어떻게 定하느냐하는 問題가 있었으나 土地收用法 第3條에 規定된 土地收用을 爲한 公益事業에 限定하도록 規定하였다.

그리고 貸付 및 分收林設定 取消時 損失과 費用辨償에 있어서는 原因者 負擔原則을 導入하여 取消後 그山林을 使用할 機關이나 事業施行者가 負擔하도록 制度化하였다.

이로서 貸付取消 및 分收林設定 取消로 因한 被害者에 對하여 損失과 費用을 辨償 또는 補償할 수 있는 根據가 마련되었으므로 下位法令에서 具體化하여 運營의 適正을 期해야 될 것이다.

第90條 (立木伐採등의 許可)

營林計劃에 依하지 아니하고 山林안에서 立木의 伐採, 山林의 毀損, 林産物의 掘取·採取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營林署長의 許可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同意받은 경우다. 休養林 造成計劃의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따로 立木의 伐採와 山林毀損 등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內容으로 改正.

山林法 第90條는 山林保護 및 資源增殖을 爲하여 가장 核心이 되는 規定으로서 基本骨格은 그대로 存置하였다.

다만, 許可事項中 保全林地 轉用許可 또는 同意를 받은 경우와 休養林造成計劃을 承認받은 경우에는 許可·同意 또는 承認時 立木伐採·山林毀損등의 妥當性 問題를 一括 檢討하기로 하고 따로 許可를 받는不

편이 없도록 簡素化함으로써 保全林地轉用 休養林造成에 對한 便宜를 提供하였다.

第90條의 2 - 第90條의 3 (採石許可等)

- 山林안에서 土石중 建築用石材(碎骨材를 포함한다). 石工藝 또는 土木用으로 使用할 價値가 있는 岩石(이하“石材”라 한다)을 掘取 採取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의 採石許可를 받아야 한다.
- 採石許可 期間은 10 年の 範圍안에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出願하는 期間으로 한다. 다만, 山林所有者가 아닌 者에 對한 許可期間은 그 山林의 使用·收益에 필요한 期間을 超過할 수 없다.
- 採石許可를 하고자 하는 地域이 國土 및 自然의 保全, 文化財 및 國家의 重要한 施設의 保護 기타 公益上 필요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採石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1 項의 採石許可에 따른 山林毀損의 復舊에 關하여는 第9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山林廳長은 일정한 地域안에 良質의 石材가 相當量 埋藏되어 있어 이를 集團的으로 採取하는 것이 山林保護上 有益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採石團地로 指定 管理할 수 있다고 採石許可 間聯規定 新設.

現行 山林法上의 土石採取 許可 事項은 採石許可와 土砂採取許可를 같이 規定하고 있다.

採石은 土砂採取와는 달리 採石期間이 長期間이고 受許可者와 住民間의 公害問題等으로 因한 紛爭의 素地가 많다.

따라서 石材資源의 適正保護 및 開發을 爲하여 採石許可·採石者의 災害發生防止·採石團地指定 管理에 關한 事項을 現行 土石採取 間聯規定에서 分離하여 山林法에 規定함으로써 國土의 毀損을 最少化하고 民怨의 豫防을 期하도록 하였다.

다만, 土石採取 許可와 關聯된 一切의 規定은 施行規則에 規定되어 있는데 採石許可 間聯規定만 法으로 規定한 것은 法體系上 不均衡한 點도 없지않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必要하다.

第91條 (山林復舊命令等)

市長·郡守 또는 營林署長이 山林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하여 山林의 毀損을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 山林의 復舊費用을 豫置하도록 되어 있는데 山林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第90條의 山林毀損 許可에 關한 規定의 適用이 排除되거나 許可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실제로 山林毀損이 隨伴되는 行爲를 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營林署長은 山林復舊費用을 豫置하게 한 후 毀損行爲를 하도록 新設.

從前에는 山林法上 毀損許可할 경우에만 復舊費用을 豫置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法律에 依하여 山林毀損 許可規定이 擬制되거나 排除된 경우에는 事實上 復舊의 必要性이 있는 경우에도 復舊費用을 豫置시키지 못하는 問題點이 있었다. 따라서 이 規定의 改正으로 앞으로는 毀損許可 與否

에 關係없이 事實上 毀損行爲를 하고자 할 때에는 復舊費를 豫置시킬 수 있게 되었다.

**第100條~102條의 2
(산불의 豫防 및 死傷者 補償等)**

- 山林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산불豫防 및 鎮火에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는 規定 新設
- 市長·郡守 또는 營林署長은 산불鎮火 및 人命救助作業으로 因한 死傷者에 對하여 消防法 第66條를 準用하여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도록 하는 規定 新設.

산불發生이 增加함에 따라 豫防的 則面에서 根源的인 對策이 必要하다.

山林所有者 또는 山林의 管理者는 산불豫防 및 鎮火를 爲하여 自己責任下에 必要한 措置를 取하도록 義務化하였는데 이는 산불등 災害發生의 경우 1次的인 責任이 山林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있음을 明白한 것이다.

山林의 管理者라 함은 山林所有者의 委任, 委託등 法律的인 意味에서의 管理者는 물론 事實上的 管理者를 모두 包含한다.

또한 산불鎮火中 死傷者에 對하여는 消防法을 準用하여 補償金을 支給받게 하였는데 이는 산불豫防 및 鎮火에 國民共感帶를 造成하고자 하는 措置이다.

**第110條~第112條의 2, 第118條,
第125條 (林野의 賣買)**

- 林野(地籍法의 規定에 의한 林野를 말한다. 以下 같다)는 山林經營을 願하는

者가 所有함을 原則으로 한다.

- 林野를 所有하고 있는 者는 林産物의 生産基盤으로서의 山林을 公共의 利益에 適合하도록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經營하거나 利用하여야 한다.

- 山林을 經營하고자 하거나 山林經營外의 目的으로 利用하기 爲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林野를 買收하고자 하는 者는 林野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長·郡守·區廳長의 林野賣買證明(이하“賣買證明”이라 한다)을 發給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買收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市長·郡守·區廳長이 賣買證明을 發給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 에 該當하는 實需要者에 限하여 發給하여야 한다.

1. 造林·育林·種苗·林産物生産·規賞樹栽培 기타 山林經營計劃書(以下“山林經營計劃書”라 한다)를 提出한 者.

2. 第1號外의 目的으로 利用하기 爲하여 林野를 買收하고자 하는 者로서 當該林野에 關한 利用計劃書(以下“林野利用計劃書”라 한다)를 提出한 者.

- 賣買證明을 發給받아 林野를 買收한 者는 賣買證明發給을 申請할 때에 提出한 山林經營計劃書 또는 林野利用計劃書대로 林野를 經營하거나 利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正當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承認을 얻어 山林經營計劃書 또는 林野利用計劃書を 變更하여 다른 用途로 그 林野를 利用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